

1. 기술규제명 : 「전자파강도 측정기준」

- 관련부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
- 개정내용
 -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강도 측정방법
- 규제구분 : 기술규정

① 기술규정의 경우 (WTO TBT 협정문 제2.9조)

점검 내용	해당여부 점검	비 고
㉠ 기술규정이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적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,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	해당없음	국제표준과 일치
㉡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	해당	동 개정과 연관된 제품의 수입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역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음
⇒ ㉠와 ㉡에 모두 해당 시 통보		